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114
----------	-----

제안년월일 : 2014년 9월 25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박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50호)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67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사유

- 현행 「수도법」 제33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위생상 조치 이행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소독등 위생조치, 세척등 조치의 위생상 조치와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규정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에 체납징수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체납관련 징수권 및 정수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본부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수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골자

- 가. “과년도 고액체납”에 대한 명칭 정의(안 제2조제9호)
- 나.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재규정(안 제40조의2)
- 다. 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대한 시장의 관리·감독 규정 신설(안 제40조의3)
- 라.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재규정(안 제40조의4)
- 마. 본부장이 과년도 고액체납을 직접 관리·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3항)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과년도 고액체납”이란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상수도사용료 100만원 이상 체납 중 시장이 따로 정한 체납(과년도분에 한함)을 말한다.

“제40조의2”를 “제40조의3”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

- 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도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 사용 전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 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 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과년도 고액 체납의 징수와 정수처분·재산압류 및 해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감사원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2.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임사무(제48조 관련)

### 1.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 도. (생략)

로. 제40조의2에 따른 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

모. 제40조의3에 따른 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보. 제40조의4에 따른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등 조치

소. 제41조에 따른 수도사용자등의 의무

오. 제42조에 따른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계량기대금 징수 등

조. 제43조에 따른 정수처분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초.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코. 제45조에 따른 부정급수 적발 및 누수신고 포상금 등의 지급

토. 제46조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결정·통보

포. 제47조에 따른 계량기 점검 및 교체 등 업무위탁

### 2. 상수도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 라. (생략)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대 안)
<p>제2조(정의) 1. ~ 8.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 padding-right: 20px;">〈신설〉</p>	<p>제2조(정의) 1. ~ 8. (현행과 같음) 9. “<u>과년도 고액체납</u>”이란 수도사업 소장이 부과한 상수도사용료 100만원 이상 체납 중 시장이 따로 정한 체납(과년도분에 한함)을 말한다.</p> <p>제40조의2(대형건축물등의 소독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소독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0조의2(소형 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수도법」 ----- ----- ----- ----- ----- -----</p>	<p>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 ----- ----- ----- -----</p>

현행	개정안(대안)
<p>제48조(사무위임) ① ~ ② (생략)</p> <p>〈신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등 위생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신설〉 제40조의4(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 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갱생·교체 등 필요한 조치(이하 “세척등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li> <li>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시설</li> </ol>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 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세척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48조(사무위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신설〉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과년도 고액체납의</p>



현행	개정안(대안)
	<p><u>징수와 정수처분·재산압류 및 해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감사원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u></li> <li><u>2.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u></li> </ol>